

# **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**

1055

**2004. 2**

## **건설 관리과**

## 200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처리번호	제목	감사지적사항	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	책임관	조치완료 여부
사회 건설 - 1	주요 간선도로에 폐자재 적치물 장기간 방치	신길5동 대방천 복개도로위 에 폐자재 (면적 약20평)를 203.10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무단적치하고 있음	현장을 철저하게 조 사하여 도로점용료 를 부과하고 즉시 시정조치 할 것	건설 관리과	<p>○조치완료</p> <p>폐자재는 토목과에서 상기지역의 보도불록 교체공사 실시로 일시 적치한 것으로 시공사에서 이동조치 완료하였음.</p>
사회 건설 - 2	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개선	0. 위원 선정시 전년도 회의 에 수시로 불참한 위원을 재 위촉하고 있으며 단순한 심 의도 위원회를 과다하게 소 집운영(연 40여회)  0. 심의위원 수당지급시 수 당지급액 합계와 수당지급 지금조서가 잘못 작성됨.	0. 위원선정시 불합 리한 점을 개선하고 과다한 위원회 소집 을 제고하기 바라며  0. 수당지급 서류 작 성시 오류가 발생하 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.	건설 관리과	<p>○조치중</p> <p>2004년 4월 광고물심의위원 재위촉시 불참한 위원 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자함.</p> <p>○조치완료</p> <p>수당지급 서류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하겠음 (즉시 시정)</p>

처리 번호	제목	감사지적사항	구의회 사정 및 처리요구사항	처리 부서	조치결과	비고
사회 건설 - 3	도로 점용료 체납 시 시효결손처분 철저	○ 도로점용료 (일시 및 계속)체납 발생 시 5년이 경과하면 즉시 시효결손처분을 하여야 하나, 7~8년이 경과한 후 처리함	○ 관련 규정을 준 수하여 시효처분을 처리 할 것	건 설 관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치완료 (매년 정기적으로 처리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(하천,구거) 사용료를 부과 후 최초 납부 후 독촉장 발부, 지속적인 체납고지 및 재산 압류 등 의 채권확보를 통해 최대한의 징수 노력</li> <li>-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행방(주소)조회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행방불명,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 체납처분 을 중지하고 시효,불납결손 처리 확행</li> <li>- 고액 결손처분자 등 결손 처분 후 압류할 수 있 는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처분을 취소하고 체 납처분 처리</li> </ul> </li> </ul>	
사회 건설 - 18	불법광고물 설치 사전예방 철저	<p>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을 년1회 실시하고 있으나 이 를 년2회 이상으로 하여 관 련 제반규정을 철저히 교육 시키고</p> <p>·무허가 옥외광고업자에 대 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이 타당하다 사료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옥외광고업 교육 철저</li> <li>· 무허가 옥외광고 업자 단속철저</li> </ul>	건 설 관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치중 : 옥외광고업 교육이 서울시 광고협의회가 위탁실 시하고 있어 교육의 횟수는 서울시 광고협회와 협 의후 좀더 철저한 교육이 실시 되도록 하겠음</li> <li>○ 조치완료 : 한국광고협회 영등포지부와 긴밀 한 협조로 관내 무허가 광고업자를 연중 조사하여 조치하고 있음(옥외광고업은 신고사항만으로 가능하 므로 무허가 옥외광고업자 발생하지 않았음)</li> </ul>	

처리 번호	제목	감사지적사항	구의회 시정과제 지정 요구사항	부서	비고
행정 -25	세외수입 관리소홀	0. 도로공간 사용료 - 조정: 86,408,000 - 징수: 44,242,000 - 징수율: 51.20%  0. 도로법위반과태료 - 조정: 243,100,000 - 징수: 59,100,000 - 징수율: 24.31%	0. 체납자에 대해 체권확보를 할 것  0. 개별방문하여 면담 독촉을 해야 할것임.  *현장 방문없으며, 서류상 독촉하는 현 실이며 제도상 문제 점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.	건설 관리과	<b>○조치완료</b> - 도로공간사용료 및 도로법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전국 온라인망을 통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확인자에 대해 지속적인 압류 예고 및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, 또한 인허가시 체납여부 조회 및 납부독려  - 고액,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면 담 및 납부독려  - 도로법위반과태료는 보도상영업시설물 제소전 화 해설립된 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취소조치함 (건관58150-3543 2003.11.12) ..부과취소및감액: 125,750,000 ..조정: 117,350,000 ..징수: 62,600,000 ..징수율: 53.34%
행정 -30	지도단속 업무소홀	포장마차, 도로점유 및 사용자 기타	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 도 및 홍보를 철저 히 할 것이며 특히 형식적인 단속이 되 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 및 현장단속이 적시에 이루어 지도 록 지도요망	건설 관리과	<b>○조치완료</b> 노점상은 정비 후 생계수단을 이유로 재발생 되는 등 완전 정비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홍보 및 계도 를 통하여 전업을 유도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음.

처리 번호	제목	감사지적사항	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처리 부서	처리결과	비고
사회 건설 -31	불법 광고물 정비 철저	관내 대형 유통 업체의 불 법 광고물 중 현장 확인 결 과 다음 사항이 미시정됨 -경방유통 (영등포동4가441-21) 가로:1개, 개시대1개 -롯데마트(영8가62-1) 가로4개 -삼성테스코 (문래3가55-3) 가로1개, 개시대1개	상기 3개 대형 유통 업체의 불법 광고물을 조속한 시일내 정비토록 할 것	건설 관리과	○조치완료  2004. 1. 6일 불법 광고물 정비완료. 첨부:[건설관리과-94(2004.1.6)]	
사회 건설 -32	2002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허위 보고	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 고시(처리번호:사회건설-30) 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 직까지 시정하지 않음 -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 비보고서와 일일복명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하고 일 일복명서에 담당직원도 단 속업무현황을 기재토록 할 것	허위 보고한 관계 공무원은 정계조치 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할 것	건설 관리과	○조치완료  정비보고서는 야간 및 새벽단속시 보고서이며 일 일복명서는 평일 근무시간의 단속 상황을 기록하 는 것으로 단속 직원 전부를 복명서에 명기 시행 하고 있음	

처리 번호	제목	감사지적사항	구의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	처리 부서	조치결과	비고
사회 건설 -34	노상적치물 방치	당산동3가558-4 래도건설 현장 도로에 공사용 자재를 무단적치하고 있음	현장조사 후 도로 점용료부과 및 즉시 제거토록 할 것	건설 관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조치완료</li> </ul> <p>2003.12.01에 당산동3가558-3 외 3필지 래도건설 신축공사장 주변 도로상 공사자재 등 무단점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사자재 적치 등 무단도로 점용을 발견치 못하였음</li> <li>- 향후 공사자재 하역작업으로 인한 무단도로점용 발생시 즉시 도로법위반으로 변상금 정수 및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</li> </ul>	
사회 건설 -37	양평동6가 한솔 아파트옆 창고 이전 및 철거	양평동지역을 열악한 환경 과 주차장부족으로 인한 민 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 며 단체장 회의에서도 빈번 하게 안건으로 채택되고 있 는 실정이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,운영하는 창고들이 다 수있음	창고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전철거 및 이전토록 조치할 것	건설 관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조치불가(현실적불가)</li> </ul> <p>본 창고는 가로정비 수거율품 보관창고로써 성 산대교 건설 당시 공사현장사무소로 사용했던 기 존 건물1동(면적·약50평)이 존치하고 있었으나 노 후되어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철거등 재정비 등에 있으며 현재 이전부지가 없어 이전이 불가한 실정 임</p>	